

대구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2가단1074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권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69,854,3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854,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14,258,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258,2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갑 1 내지 갑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B이 원고에 대한 214,258,250원의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8. 23.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214,258,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처인 B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수증 당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과 을 1 내지 을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 이전에 위 B이 2012. 12.경 소외 C에게 빌린 근저당권부 채무 120,000,000원과 원고가 2017. 8. 3. 위 아파트를 압류한 근거인 위 B의 별건 국세채무 150,145,610원을 피고의 출연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2017. 8. 23. 당시 아파트의 가액에서 위 돈 합계 270,145,61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범위에서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6, 을 4, 을 7-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이후인 2012. 12. 14.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2017. 3. 10.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달 13. 말소등기 된 사실, 한편 권리자 대한민국(처분청:

김천세무서)은 2017. 8. 2.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B은 위 압류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 31,804,280원, 법인세 118,341,330원 합계 150,145,610원을 2017. 8. 23. 전부 납부하였고 같은 날 위 압류등기가 말소등기 된 사실1)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저당권부 채무 120,000,000원이 변제된 것은 이 사건 사해행위인 증여 이전으로서 사해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동 금액 상당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담보력을 회복한 것이므로 이를 아파트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러한 법리는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취소채권자의 담보물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일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 일반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하고, 취소채권자는 그 채권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주장을 살피건대, 위 150,145,610원의 국세채무에 관하여는 이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조세채권으로 보이는데, 국가인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와 동시에 변제를 받음으로써 사해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는바, 동 금액 상당은 원고가 원래 이 사건 채권액으로써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던 부분이었는데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담보력이 부활하였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을 받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2), 채무자와 피고 측(부부로서 가정생활공동체임)이 국가를 신뢰하고 조세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재차 동액 상당에 관하여 다른 채권으로써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50,145,610원이 아파트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69,854,390원3)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9,854,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소의 B은 국세채납자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자(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이고(이하 “B”이라고만 합니다), 피고 A는 B의 배우자입니다(갑 제2호증 주민등록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

B은 2015. 9. 21.부터 2016. 8. 21.까지 ‘주식회사 E’(건설업/건물건설업체)의 대표자입니다(갑 제3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구미세무서장은 위 사업에 대하여 법인에게 2015년 귀속 법인세 1건 124,446,539원,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1건 41,622,609원을 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하였으나 이를 일부분만 납부하여 이에 대한 법인의 채납은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포함하여 214,258,250원입니다. 이후 법인의 100%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B에게 독촉하였으나, 이를 미납하여 채납액은 아래 【표1】과 같이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포함하여 214,258,250원에 이릅니다(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합니다, 갑 제4호증 법인세및부가가치세 신고서일부, 갑 제5호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조회, 갑 제8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아래 【표2】와 같이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자로, 납세의무가 관련법령에 따라 성립하였고,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채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채납자 B의 피고에 대한 아파트 증여행위

B은 이 사건 조세채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2017. 8. 23.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합니다, 갑 제6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주민등록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표1】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내역(2022. 02. 10. 기준)

(단위: 원)

순번	세목	귀속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⁴⁾	주된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가산금	채납액 (가산금포함)
	계				127,959,910	86,298,340	214,258,250
1	법인세	2015년	2016.6.1	2016.5.31	24,781,150	23,221,990	48,003,140
2	법인세	2015년	2016.7.1	2016.6.30	42,097,100	25,699,870	67,796,970
3	부가가치세	2017년1기 예정	2016.8.1	2016.7.31	61,081,660	37,376,480	98,458,140

【표2】 주식회사 E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2022. 02. 10. 기준)

(단위: 원)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⁵⁾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고지세액	가산금	채납액 (가산금포함)
	계				127,959,910	86,298,340	214,258,250
1	법인세	2015년	2015.12.31	2016.5.31	24,781,150	23,221,990	48,003,140
2	법인세	2015년	2015.12.31	2016.6.30	42,097,100	25,699,870	67,796,970
3	부가가치세	2017년1기 예정	2017.3.31	2016.7.31	61,081,660	37,376,480	98,458,140

3.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법령

4) 본래 대법원2003두13083에서 제2차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입니다.

5) 납세의무 성립일에 관한 근거법령은 위 "3. 가. 관련법령"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인지세(印紙稅)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2018.12.31>

6. "강제징수비"(強制徵收費)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납세조항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구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관련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표1] 기재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 성립하였고,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은 2017. 8. 23. 이루어진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것들이고,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전액이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법리

- 1)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 1) 위 2.의 나. 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은 2018. 8.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습니다(갑 제6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일(2017. 8. 23.) 당시 B의 재산 상태를 보면, 아래 【표3】 과 같이 B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사해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한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8 판결 등 참조), B은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갑 제7호증 채납자 재산현황표와 공동주택가격조희).

【표3】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일(2017. 8. 23.) 당시 B의 재산 내역

순번	항목	금액(원)	비고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산정 제외)	220,000,000	갑 제6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7호증 채납자 재산현황표

			와 공동주택가격조치.
	합계	220,000,000	
소극재산			
1	이 사건 조세채무	-127,959,910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합계	-127,959,910	

다.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판결 등).
- 2)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 3) B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나아가 피고는 B의 배우자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할 것입니다. 만일 피고가 위 사실을 다투고자 한다면 스스로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제척기간

- 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손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합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2021. 10. 부동산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분석계획에 의거 자료 검토결과 이 사건 증여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바,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제척기간은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9호증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표).

6. 가액배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 체결일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 9. 24.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은 220,000,0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전부에 상응하는 214,258,2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6호증 이 사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끝.

[별지]

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 대구광역시 북구 F와 1필지 G아파트 H동

2.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F, I에 있는 G아파트 H동[도로명주소]대구광역시 북구 J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지붕14층아파트

1층 아파트 775.3624㎡

2층 아파트 775.3624㎡

3층 아파트 775.3624㎡

4층 아파트 775.3624㎡

5층 아파트 775.3624㎡

6층 아파트 775.3624㎡

7층 아파트 775.3624㎡

8층 아파트 775.3624㎡

9층 아파트 775.3624㎡

10층 아파트 775.3624㎡

11층 아파트 775.3624㎡

12층 아파트 775.3624㎡

13층 아파트 775.3624㎡

14층 아파트 775.3624㎡

부속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노인정,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521.4㎡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경비실 12㎡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지하주차장, 재활용품창고, 전기, 발전기, 전력감시실 5283.61㎡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5522.819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구광역시 북구 F 대 10249㎡
2. 대구광역시 북구 I 대 897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1층 K호 84.9850㎡

대지권의 표시

- 1, 2 소유권 대지권 19228분의 43.4054 끝.

1) 갑 6, 을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23. D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210,000,000원의 신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150,145,610원의 재원이다.

2) 즉, 이 사건 사해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동 금액 상당은 김천세무서에 순위가 밀려서 변제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와 동 순위여서 일정 금액에 관하여 안분배당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의칙상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220,000,000원-150,145,610원.